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7. 08. 27 (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7. 09. 10 (월)
- 다. 상정일자 : 2007. 09. 10 (월) 제14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 김장래)

- 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나. 주요골자

- 1)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이 총 5건 22,178㎡ 848,589천원이고, 처분이 총 2건 28,061㎡ 238,116천원으로 그 상세내역을 보면,

○ 토지매입

-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하진부리251-13 외 4필(2,750㎡)
- 평창 종부리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종부리508-44 외 8필 (12,924㎡)

-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 송정리1306-2 (1,004㎡)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재산리1443 외 1필(1,800㎡)

○ 토지매각

-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부지, 창동리332 외 7필(25,966㎡)

○ 교환 취득·처분

- 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으로, 대화리736번지 1필 3,700㎡를 취득하고, 대화리446-1번지 외 1필 2,095㎡를 처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상진)

가.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 2차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후 추가로 발생한 공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 취득대상 재산을 보면,

-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부지 매입”은 현재 면사무소내 및 주변에 주차수요량인 45대로는 각종 행사시 늘어나는 최대150여대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많은 주민불편이 제기되는 바, 주민불편의 해소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인 진부면 하진부리251-13번지 외 4필지 2,750㎡를 504,928천원에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 “평창 종부리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매입”은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계획된 2007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체 재산집단화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불용잡종재산 처분 재원을 이용하여 향후 평창읍 하수종말처리장 설립예정지이며 31번 국도 확장노선

이 계획되어 있는 현재 폐 평창읍 비위생매립장 일대의 약 24,147㎡의 연접지인 평창읍 종부리 508-44번지외 8필 12,924㎡ 를 196,31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 매입”은 오대산 국립공원 인근에 조성하려던 공예전시·체험관 부지가 국립공원 관련 인·허가에 어려움으로 조성 위치가 당초 진부면 동산리16-3번지(월정사집단시설지구중 숙박시설지구)에서 진부면 송정리1306-3번지외 2필지 1,554㎡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부지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인근의 진부면 송정리 1306-2번지 1,004㎡를 65,762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매입”은 용평면 재산리 1443번지(1,542㎡), 1444번지(258㎡) 일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서 부지면적 1,800㎡를 55,80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임.

다. 매각대상 재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 부지 매각”은 봉평 중·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봉평면 학교이전추진위원회간 협의된 사항으로 이전부지 실 사용면적 38,000㎡ 중 공유재산인 봉평면 창동리 332번지외 7필 25,966㎡에 대하여 일반매각방식으로 추정가 238,116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임.

라. 교환 취득·처분 대상 재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 “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으로 매립장내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므로써 매립장 부지를 집단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유지인 대화면 대화리736번지(전/3,700㎡)를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유지인 대화면 대화리446-1(전/1,745㎡), 446-2(대/350㎡) 2필지(2,095㎡)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임.

마.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 봉평중·고등학교 이전부지매각은 우리지역의 학교교육을 위한 업무성격의 공공성이 매우 강하고, 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은 토지의 감정평가금액을 보면 차액이 1,817천원으로 교환부지의 재산가치는 경미하나 공유지의 향후 효용가능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유지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고, 진부면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 평창 종부리 공유재산 부지매입, 오대산 공예전시관 진·출입로 부지매입,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건은 매립절차상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으나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공유재산관리는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질의요지	답변요지
○ 일부 물건의 경우 지난번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재 제출된 경위는?	○ 사업을 위하여 취득의 필요성 때문에 재 제출하였음.
○ 화전대토 매각대금에 대하여 공유지 집단화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 해 볼 경우 재 검토의 필요성 대두.	○ 현 사업부지에 대하여 연접부지 확보를 통해 주민들에게 활용가능한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임.
○ 오대산공예전시관 당초 사업장이 옮겨진 이유는?	○ 공원지역관련법상 저촉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었음.
○ 오대산공예전시관사업장 뒤편 국유지 매입계획은 없는지?	○ 향후 주차등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매입계획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대산공예전시관에 대하여 향후 운영계획은?	○ 관내 목공예 사업자들의 법인화를 통하여 임대 운영 계획
○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부지의 기부체납이 안된 이유는?	○ 당시에 면적분할이 곤란한 상황이 대두되었음
○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매각관련 동 사업의 추진계획은?	○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설계는 금년내 마무리하고 착공은 내년초 정도 시작할 계획임
○ 봉평 중·고등학교 부지매각관련 현 학교부지에 대하여 교환가능성은?	○ 학교시설 준공후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으로, 현 학교부지 용도폐지를 통하여 잡종재산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 1부. 끝.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08.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안이유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한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계획2차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임.

2. 주요내용

□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취득이 총 5건 22,178㎡ 848,589천원이고

처분이 총 2건 28,061㎡ 238,116천원으로 그 상세내역은,

가. 토지매입

○ 진부면사무소 청사 주차장 확장 부지, 하진부리 251-13 외

4필 2,750㎡

○ 평창 종부리 군유재산집단화 부지, 종부리 508-44 외

8필 12,924㎡

○ 오대산 공예전시체험관 진·출입로 부지, 송정리 1306-2
1,004m²

○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부지, 재산리 1443 외 1필 1,800m²

나. 토지매각

○ 봉평중·고등학교 이전 부지, 창동리 332 외 7필 25,966m²

다. 교환 취득·처분

○ 대화위생매립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 교환으로

- 대화리 736번지 1필 3,700m²를 취득하고,

- 대화리 446-1번지 외 1필 2,095m²를 처분하려는 것임.

3. 첨부자료 및 참고사항

가. 2007년도 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2차변경안

나. 예산조치사항 -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보

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운용계획안

라. 관계법령

관 계 법 령 발 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예정가격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 시 1건당 5억원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 설비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은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은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재산